

안녕하십니까? 을지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입니다.  
 항상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주시는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,  
**청탁금지법(김영란법)**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

##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 (제13278호)

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,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'김영란법'이라고도 합니다.

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**2016년 9월 28일부터** 시행되었습니다.

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,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

을지대학교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 입니다,



사진출처 : 권익위

### ▶ 부정청탁 예시

A가 진료를 보기 위해 접수 하였으나 순서가 밀려서 병원 직원 B의 지인인 C를 통해 진료를 먼저 볼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병원 직원 B가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경우

부정청탁 **A(1천만원 이하 과태료)**

부정 청탁받아 처리한 **B(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**

제3자 **C(일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, 공직자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)**

### ▶ 금품수수 예시

1.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,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?

▶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,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,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

2.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?

▶ 경조사는 결혼,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,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·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

외래, 입원, 수술 스케줄 조정 요구 등도 부정 청탁이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  
 단,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

환자 의뢰, 진료 상담, 진료 협력 등 자세한 문의는  
 아래와 같이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.

진료협력센터 : 042)259-1145~6

**EMC** 을지대학교병원